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 - 16
----------	-----------

발의연월일: 2019. 4. .

발 의 자: 황영호, 정정희, 김현희, 김용원
윤유선, 김동협, 김선경, 송순호
김성한, 이종숙, 이의걸, 송영섭
이충현, 박주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홍보) 신설(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1 참고)
 - 1) 「병역법」 제82조
 - 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 다. 합 의: 복지정책과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4. 8. ~ 4. 15.) 결과: 의견없음
 - 2) 전문 및 관계법령: 불 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 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퍼센트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관계 법령】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